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5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9.

발 의 자: 백종헌 · 유용원 · 서천호

박성훈 • 조경태 • 김예지

진종오 · 정성국 · 박정하

정희용 · 이헌승 · 김용태

김상욱 • 박준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· 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,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 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동업자조합·한국식품산업협회, 「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,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등 록한 소비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율심의기구로 등 록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「민법」, 「표시・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

된 기관·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표시·광고하려는 자의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제5호신설).

아울러 현행법 제8조 및 제10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임에도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함(안 제8조제1항제7호,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제7호 중 "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"를 "다른 자나 다른 자"로 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"영업자"를 각각 "식품등"으로 한다.

- 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식품등의 표시·광고 와 관련한 업무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 는 단체
 - 가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식품등 위생 관련 비영리법인
 - 나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 심의기구등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	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		
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	의 금지) ①		
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			
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			
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			
여서는 아니 된다.	.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7.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	7		
는 자기의 식품등을 <u>다른 영</u>	<u>다른 자</u>		
<u>업자나 다른 영업자</u> 의 식품등	<u>나 다른 자</u>		
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			
또는 광고			
8. ~ 10. (생 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(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	제10조(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		
의) ① (생 략)	의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	②		
·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			
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
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			
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			
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			
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			

록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<u>영업자</u>의 표시·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.

④ ~ ⑥ (생 략)

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 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.				
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				
당하는 자로서 식품등의 표시				
•광고와 관련한 업무실적 등	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				
<u>갖춘 기관 또는 단체</u>				
가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				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				
가를 받아 설립된 식품등				
위생 관련 비영리법인				
<u>나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</u>				
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				
따른 자율심의기구등				
③				
<u>식품등</u>				
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		
7				

- 1. (생략)
- 2.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<u>영업자</u>의 표시·광 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
- 3. (생략)
- ⑧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식품등
<u> 7 B O</u>
3. (현행과 같음)
⑧ (현행과 같음)